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7.9.19.] [대통령령 제28310호, 2017.9.19., 일부개정]

【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검역물을 우편물뿐 아니라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4641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탁송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하거나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는 사유가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를 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정 · 개정문】

제2조의2제3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낭충봉아부패병(囊蟲蜂兒腐敗病)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소재지, 가축의 소유자등 및 명령일자를 관할 시·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4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별표 3 제2호기목의 위반행위란 중 “식용란”을 “가축의 알”로 하고, 같은 호 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고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노목부터 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1개월과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상 위반
고.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8호의2	100	200	300

부칙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제11호의2·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